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한정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67

발의연월일: 2024. 7. 18.

발 의 자:한정애·김준형·이학영

이수진 · 송옥주 · 부승찬

이병진 • 이성유 • 이인영

김현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형법」에 따르면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, 선고유예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주형(主刑)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몰수를 할 수 있음.

그런데 최근 문제가 된 소위 'n번방' 사건의 경우 SNS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 해자를 일일이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, 최근 관련자들이 수사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, 행위자의 사망 이나 불특정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관련 범죄수익 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그러므로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「형법」 제49조

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 신설).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로하고,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몰수 등의 특례) 「형법」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은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의 사망, 불특정, 소재불명 또는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선고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몰수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몰수를 선고하거나 추징을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몰수를 선고받은 사람에

대하여는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0조의2(몰수 등의 특례) 「형
	법」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제8
	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몰
	수 및 추징은 행위자에게 유죄
	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
	위자의 사망, 불특정, 소재불명
	또는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
	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
	도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
	선고할 수 있다.
제10조의2(추징 집행의 특례) (생	<u>제10조의3</u> (추징 집행의 특례) (현
략)	행 제10조의2와 같음)
제10조의3(몰수·추징의 집행을	제10조의4(몰수·추징의 집행을
위한 검사의 처분) (생 략)	위한 검사의 처분) (현행 제10
	조의3과 같음)
제10조의4(범죄수익등의 추정)	<u>제10조의5</u> (범죄수익등의 추정)
(생 략)	(현행 제10조의4와 같음)